



해외자산 신고제도(T1135)

질문

○씨는 한국을 떠나 캐나다에 올 때 한국에 있는 재산을 정리하지 않았고 아직도 대부분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캐나다에 살고 있기는 하지만 언젠가는 한국으로 돌아갈 수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씨에게는 세금신고를 하는 것과는 별도로 매년 캐나다에서 해외자산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 번거로운 일입니다.

해외자산 신고제도의 취지는 무엇이고 구체적으로 어떻게 신고해야 할까요? 또한, 해외자산 신고를 하면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하나요?

검토

캐나다 정부는 소득세 신고제도와 별도로 해외자산 신고제도를 1998년부터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에 따라 개인과 법인을 포함한 캐나다 거주자는 국세청에서 명시한 해외자산의 합계를 \$100,000 이상 보유하고 있을 때 해당 자산의 내역을 매년 국세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해외자산 신고서의 명칭인 Foreign income verification statement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동 제도는 캐나다 거주자가 해외에 보유하고 있는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해외소득

을 빠짐없이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서 도입되었습니다. 즉, 해외에 있는 자산을 신고하게 되면 해당 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해외소득을 신고하는 것이 자연스러우므로 해외자산 신고제도는 해외소득 누락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따라서 납세자 입장에서는 해외자산 신고를 함으로써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하는 것으로 오해하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캐나다 정부에서는 2013년부터 해외자산 신고제도를 강화하였습니다. 그동안은 자산 별로 일정한 금액의 범위를 표시하였으나 변경된 제도에 따라 각 자산의 소재국가, 금융기관명, 자산과 관련된 소득 등을 자세하게 기술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제도의 개선은 캐나다 정부가 앞으로 해외소득에 대해 과거보다 엄중하게 과세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자산 신고시 구체적인 해외자산 내용과 이에 대응하는 소득 정보를 빠짐없이 준비해서 해외자산 신고를 잘못하여 받을 수 있는 불이익을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해외자산 신고제도에 대한 주요한 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신고 대상자

세법상 캐나다 거주자로서 국세청에서 명시한 해외자산의 총합계가 \$100,000을 넘으면 해외자산 신고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해외자산의 총합계가 \$100,000을 넘지 않으면 신고의무가 없으며, 부부가 공동명의로 보유하고 있는 자산은 지분율대로 각자 신고해야 합니다.

캐나다 거주자가 된 첫해에는 해외자산 신고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이는 처음으로 거주자가 된 연도에만 적용되므로, 캐나다 거주자가 캐나다를 떠났다가 돌아와 다시 거주자가 된 경우에는 첫해에도 해외자산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한편, 납부할 세금이 없어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해외자산 신고는 빠뜨리지 않고 해야 하며, 캐나다를 떠나는 연도에도 해외자산 신고의 의무가 있습니다.

2) 신고 대상 자산의 종류

국세청에서 명시하고 있는 신고대상 자산은 a) 예금, 적금 등의 해외금융계좌 b) 해외

법인 주식 c) 대여금, 미수금 및 채권 d) 비거주자 신탁 지분 e) 해외 부동산 f) 보험, 선물, 옵션 등의 기타 자산 g) 캐나다 증권계좌를 통해 보유하는 해외자산으로 구분됩니다. 한편, 임대목적이 아닌 개인거주 목적이거나 적극적 사업(Active business)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은 신고대상 자산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일정한 비율 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관계회사주식(Foreign affiliate)도 해외자산 신고대상에서 제외되나 이는 해외주식 신고제도(T1134)를 통해 별도로 신고해야 합니다.

3) 자산의 평가 방법

해외자산은 원가(Cost)로 신고하는데 원가는 자산 취득금액과 취득 부대비용을 합하여 계산합니다. 캐나다 거주자가 되기 전에 취득한 자산은 캐나다 거주자가 된 시점에서의 시장가격(Fair market value)으로 다시 평가하여 원가 금액을 계산하는데, 이렇게 함으로써 캐나다 거주자가 되기 전까지 발생한 미실현 소득(Accrued revenue)에 대해 과세하지 않습니다. 만약, 거주자가 된 이후에 증여 또는 상속으로 해외자산을 취득한 때에는 증여 또는 상속 시점의 시장가격을 원가로 산정합니다. 해외자산을 원가로 신고함으로써 해당 자산의 시세가 변경되더라도 신고할 금액이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4) 환율 적용 방법

해외자산은 해당 자산을 취득 또는 증여/상속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 캐나다 달러로 환산해야 하는데 캐나다 거주자가 되기 전에 취득한 자산은 캐나다 거주자가 된 시점에서의 환율을 적용합니다. 한편, 해외 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은 발생 시점의 환율을 적용하여 환산하는 것이 원칙이나, 소득이 연중 평균적으로 발생했다면 연평균환율을 적용할 수 있습니다.

5) 신고 내용

해외자산에 대해 신고할 내용은 각 자산의 소재 국가명, 금융기관명, 연중 최고원가 금액, 연도 말 원가금액, 자산의 보유로 인해 발생한 손익과 자산의 매각으로 인해 발생한 양도손익 등입니다. 한편, 해외자산 합계액이 \$100,000~\$250,000일 때에는

신고대상 자산별 보유 여부와 해외자산 총 손익만 신고하는 간편신고방법(Simplified reporting method)을 사용할 수 있습니다.

6) 신고 방법

해외자산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우선 세금신고서에 해외자산이 있다는 것을 표시해야 합니다. 구체적으로 세금신고서 두 번째 페이지의 “Did you own or hold specified foreign property where the total cost of amount of all such property, at any time in 20XX, was more than CAN\$100,000?”이라는 질문에 Yes 표시를 해야 합니다. 이와는 별도로 해외자산 신고서(T1135)를 국세청에 우편으로 보내거나 인터넷을 통해 해외자산 신고를 해야 합니다. 우편으로 보낼 때는 등기우편(Registered mail)을 이용해서 혹시 발생할 수 있는 우편 사고에 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7) 신고 기한

해외자산의 신고기한은 소득세 신고 기한과 같습니다. 따라서 사업소득이 없는 개인은 4월 말까지, 사업소득이 있는 개인과 배우자는 6월 15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한편, 법인은 법인세 신고 기한인 결산일로부터 6개월이 되는 시점까지 해외자산을 신고하면 됩니다.

8) 벌금

해외자산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에는 다양한 종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우선 단순한 미신고시 매일 \$25씩 최고 \$2,5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하지만 국세청에서 신고인이 중과실(Gross negligence)에 의해 의도적으로 신고하지 않았다고 판단할 때는 매일 \$500씩 최고 \$12,000의 벌금이 부과되고, 국세청에서 신고인에게 해외자산을 신고하도록 요청하였으나 이를 따르지 않으면 매일 \$1,000씩 최고 \$24,000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만약 미신고 후 24개월이 지났을 때는 벌금 액수가 미신고 자산의 최대 5%에 달할 수 있습니다.

한편, 해외자산 신고를 하였지만, 중과실에 의해 의도적으로 허위 또는 누락한 자산

이 있으면 해당 자산의 5%와 \$24,000중 큰 금액을 벌금으로 부과합니다. 이러한 해외 자산 미신고에 대한 과중한 벌금제도를 통해서 캐나다 국세청에서 해외자산 신고를 엄격하게 운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9) 과거의 잘못된 해외자산 신고의 수정

과거에 해외자산 신고를 하지 않았거나 잘못 신고한 경우에는 자진신고제도 (Voluntary disclosure program)를 이용해서 과거의 잘못된 해외자산 신고를 바로잡는 것이 좋습니다. 자진신고시에는 해외자산 신고 외에 해당 자산으로부터 발생한 소득도 신고해야 하므로 과거의 소득세 신고도 함께 수정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한편, 자진신고가 승인되면 과거의 해외자산 미신고에 따른 벌금이나 법적 처벌을 면제받게 됩니다.

답변

해외자산 신고제도는 해외자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을 성실하게 신고하도록 유도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며, 해외자산을 신고한다고 세금을 더 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O씨가 해외자산을 신고하기 위해서는 T1135 양식(Foreign income verification statement)에 해외자산의 종류, 국가명, 금액 등을 기록해야 하는데 해외자산 총액이 \$100,000~\$250,000일 때에는 상대적으로 간편한 방법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한편, O씨가 과거에 해외자산 신고를 하면서 잘못되거나 빠뜨린 정보가 있다면 이와 관련해서 과중한 벌금이 부과될 수 있으므로 주의해야 합니다. 이때에는 이를 바로잡기 위해서 국세청에서 권장하는 자진신고 제도를 이용하여 과거의 잘못된 해외 자산 신고를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